

서울특별시 금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영희 의원 발의]

의안번호	2347
------	------

발의일자 : 2023. 5. 31.

발 의 자 : 윤영희 의원

찬 성 자 : 이인식,도병두의원

1. 제안이유

노화로 인한 성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에 발생하는 갱년기 증후군 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 질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으로 하여금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를 위한 건강 증진 지원의 책무와 갱년기 증후군 추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구청장으로 하여금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15조 및 제16조 등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입법예고 : 2023. 6. 1. ~ 6. 7.

서울특별시 금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금천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갱년기 증후군”이란 노화로 인한 성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에 발생하는 여러 증상을 말한다.
2.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란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2. 갱년기 증후군 관련 심리·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갱년기 증후군 관련 홍보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06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15조(영양개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상태를 조사하여 국민의 영양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영양에 관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1. 영양교육사업
2. 영양개선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3. 기타 영양개선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

제16조(신체활동장려사업의 계획 수립·시행)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체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교육사업
2.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3. 그 밖에 신체활동장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내용·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6. 22.] [보건복지부령 제892호, 2022. 6. 22., 일부개정]

제9조(영양개선사업)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민의 영양상태에 관한 평가사업
2. 지역사회영양개선사업